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검사위원 5인중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.

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제2항, 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별 표 제2호중 일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	비	50,000 원
---	---	-----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</p> <p>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</p> <p>② 생 략</p> <p>③ 생 략</p> <p>④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⑤ 생 략</p> <p>(별표 제2호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일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 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 략</td> </tr> </table>	일 비	20,000 원	여 비	생 략	<p>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</p> <p>① 감사위원 5인중 당해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.</p> <p>② 삭 제</p> <p>③ 삭 제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⑤ 생 략</p> <p>(별표 제2호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일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50,000 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행과 같음</td> </tr> </table>	일 비	<u>50,000 원</u>	여 비	현행과 같음
일 비	20,000 원								
여 비	생 략								
일 비	<u>50,000 원</u>								
여 비	현행과 같음								